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56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 한준호·김문수·박용갑

이건태 • 복기왕 • 박균택

정준호 • 허성무 • 정태호

이용우 · 강유정 · 박상혁

이해민 · 김원이 · 김성회

김동아 · 조승래 의원

(17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, 2023년 10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,395개소 중 16,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, 그 중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,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

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,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등).

법률 제 호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수급계획"을 "수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계획을"을 "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"로 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후단 중 "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"를 "다음 각 호의 사항도"로 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
- 2.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

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5조(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제5조(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수립)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) 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 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. -----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는 계획을-----제12조(시설 점검) <u>①</u> -----제12조(시설 점검) 시장・군수・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 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유지 · 관리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--다음 각 호의 사항도----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 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. <신 설> 1.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 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

	느ㅇ 가츠 기계자키기 서키디
	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
	었는지 여부
<u><신 설></u>	2.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의
	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
	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
	는지 여부
<u><신 설></u>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중화장
	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
	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
	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시장
	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
	<u>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
	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그 결과
	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
	<u>있다.</u>